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4일 17시 55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개선조치 등의 명령	3

## 개선조치 등의 명령

2014.04.17 조회수 567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3
담당부서	기후환경과
상위법령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조례	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
유형	2호 - 명령(시정 등)
등록사유	환경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12-12-31
규제시행/폐지일	2012-12-31
규제내용	제6조(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)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도한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. 1.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.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.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.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5

# Yeosu Web Contents

